

2014.12.31.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
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가 폐지되어,

모든 병·의원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병·의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,
쉽게 할 수 있습니다.

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 병·의원 도움 자료

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

Contents

신체검사 일반

1. 신체검사란?
2. 운전면허관련 용어
3. 신체검사 기준

신체검사 유의사항

4. 검사 전 확인사항
5. 검사 후 확인사항
6. 검사비용의 산정

신체검사서 작성방법

7. 검사서식 다운로드
8. 민원인 서식 종류
9. 검사서 기재시 유의사항

신체검사는 자동차 운전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
민원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적성검사를 받을 때
병·의원에서 수행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
의미합니다.

운전면허 신체검사는

운전능력 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,

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.

병·의원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, 정신질환 등
특이사항 발견시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.

- ◆ **자동차 운전면허** :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운전능력을 갖춘 자에게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 것
- ◆ **정기적성검사** : 취득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에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재발급
- ◆ **수시적성검사** : 신체 · 정신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운전가능여부를 판정
- ◆ **면허 갱신** : 2종 운전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10년째 되는 해에 재발급
- ◆ **신규 발급** :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
- ◆ **면허 종별 운전 가능한 자동차 범위**
 - **1종 대형특수** : 1종 보통 가능차종 외 승차인원15인승 초과 승합차, 적재중량 12톤 이상 화물차, 긴급자동차 등
 - **1종 보통** : 2종 보통 가능차종 외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,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
 - **2종 보통** : 승용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,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

■ 면허 종별 신체검사 항목

◆ 시력은 모든 면허에 검사 필요(단,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갱신은 제외)

항 목	1종 대형 · 특수		1종 보통		2종 면허		비고
	신규	적성	신규	적성	신규	갱신	
시 력	○	○	○	○	○	-	
색채식별	○	-	-	-	-	-	
청 력	○	○	-	-	-	-	
운동능력	○	○	-	-	-	-	문진포함

출처 :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 등 재구성

◆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, 정신질환 등 장애사유에 따라 항목 변경

■ 면허 종별 적합 기준

1종 대형 '특수'

시력 양안 0.8이상, 각안 0.5이상 (교정시력)

색채식별 적색 · 녹색 · 황색의 식별 가능

청력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
(단, 보청기 착용자는 40dB)

운동능력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(문진포함)

1종 보통

시력 양안 0.8이상, 각안 0.5이상 (교정시력)

2종 보통

시력 양안 0.5이상,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.6이상
(교정시력)

■ 병·의원 신체검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
- ◆ 도로교통법은 **아래 3종의 검진결과**를 **신체검사서**로 **같은**하
신체검사 前 반드시 **검진여부**를 **확인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
체
검
사
서
같
음

- ◆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)
- ◆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(의료법 제17조)
- ◆ 질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(병역법 제11조)
※상기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민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

- ◆ **검사결과가 기준을 충족**하는 민원인은 **신체검사서**가 **필요 없으니**,
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로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※ 단 1종 대형특수는 추가검사 필요(청력, 운동능력 등)

- ◆ **건보공단과 병무청 검진통보서**는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**행정망으로
조회** 가능합니다.(**진단서**는 조회 안되므로 **개별 지참**해야 합니다.)

■ 수시적성검사대상자 검사 전 확인사항

- ◆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**가까운 시험장**에 **반드시 문의** 요망
☞ **가까운 시험장 안내 ☎1577-1120**

■ 신체검사 부적합 민원인 검사방법

- ◆ **시력 측정**은 컴퓨터측정기로 정밀측정, 안경 조정, 명암관계 같이 일시적 시력장애 현상 제거 후 **재검 가능** 합니다.
- ◆ **각 안**이 **양안기준**을 **초과**할 경우 신체검사 **적합**으로 간주합니다.
- ◆ **색채 식별**은 기준 미달시 식별연습 후 **2회 검사 가능** 합니다.
- ◆ 청력은 청력검사기를 활용하여 검사하고, 보청기 착용이 어려울 경우, 전문의의 정밀검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.
보조장치 부착자는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기재바랍니다.

- **민원인이 자기신고서**에 청력 및 색채식별 **이상 신고**한 경우
 - ◆ 의료기관은 색채식별 능력의 판정 및 청력검사에 필요한 기기를 확보
 - 의료기관은 색채식별 부분 색약으로 신고한 민원인 간이검사 수행
 -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 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으나, 청력에 따른 조건부과를 위한 검사가 필요
 - ◆ 해당 민원 : 1 · 2종 보통 응시원서,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서
 - ◆ 작성양식(게시물 內 붙임 참조)

색채식별 · 청력 검사서

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45조(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)에 따른 색채식별·청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도로교통공단 귀하

성명	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
주소		

색채식별·청력 검사결과

검사 항목 : 삼색식별 [] 청력 [] (※ 자기신고에 따른 필요 항목만 선택 검사)

삼색식별	청력	
적·부	우	좌

기타 의사소견	
---------	--

년 월 일

병원장

(인)

의사면허번호

담당의사

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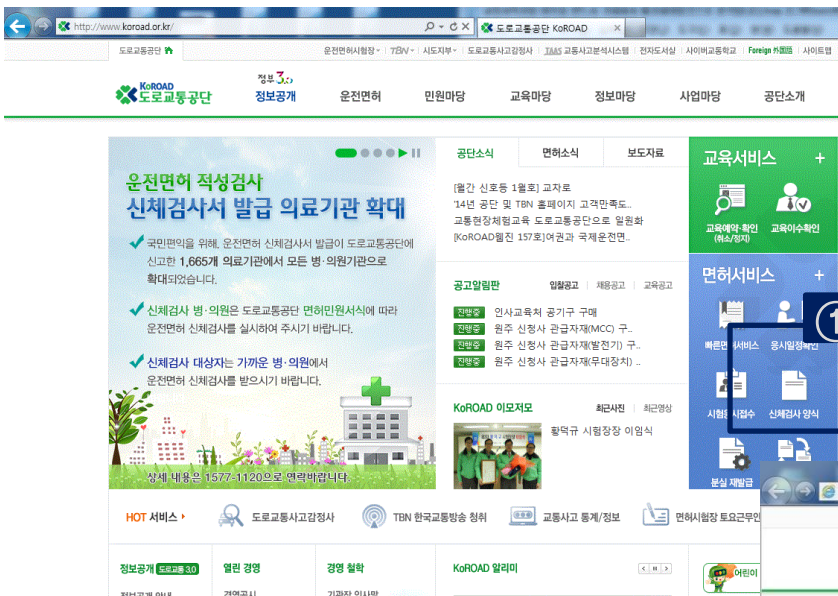
■ 검사비용의 산정

◆ 검사비용은 **보건복지부**에서 **고시**하는 **의료수가**에 따라
병의원에서 **자율**적으로 **산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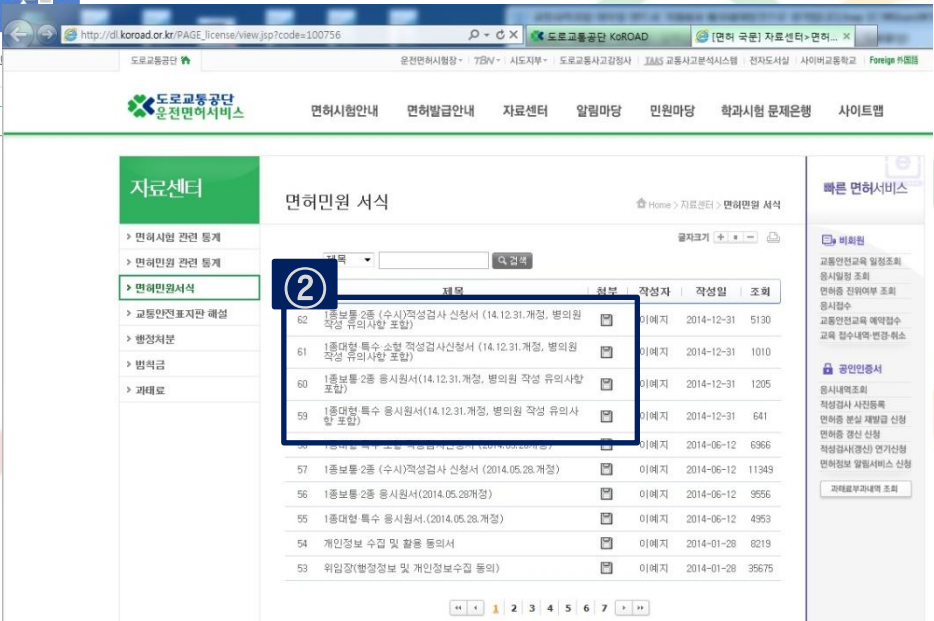
※ 참고사항)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검사비용

- 1종 대형/특수 면허 : 6,000원
- 1종 보통 및 2종 보통 : 5,000원

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신체검사 서식 받기



- 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
중간 우측 **신체검사 양식** 클릭



① 59~62번 게시물 신청서와 병의원 작성 유의사항 받기

❖ 서식은 총 4종으로 **운전면허 응시원서 2종**과 **적성검사 신청서 2종**이 있습니다.

[illegible][illegible]

신정기(수시)적성검사 제1종 [] 대형 [] 특수 신성서
 [] 소형 [] 소형

※ 두꺼운 필선고시로 있으므로 발아내를 확인 후 적어서 칠해 제출하기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일 _____ 발급일 _____ 처리기간 _____

수명 _____ 성적 _____

주민등록번호 _____ 운전면허번호 _____

주소 _____

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

E-메일 _____

본인의 다-이메일, 휴대전화, 승용차 등 운전면허를 정시기와 인쇄된 운전면허 정보를 제1종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illegible]

 검사서식 앞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바랍니다.

[illegible]

① 신청서는 신분증의 사진,
주민번호 등 기재사항과
일치 여부 확인 합니다.

② **병원장의 직인과 담당의사
실인은 사진과 겹쳐 날인,
투명테이프 부착 합니다.**
(올바른 사진 예시-붙임)

★
사진 임의 교체를
방지하기 위해 반드시
날인 후 테이핑바랍니다.

증명 사진은 표준 규격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.



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

- 3cm × 4cm 탈모, 상반신, 무배경,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
- 복사,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
-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
-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
- 귀 부분이 노출 되어야 하며 흰색 바탕의 칼라 사진

■ 신체검사서 기재시 유의사항

◆ 검사서식 뒷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바랍니다.

서 식	작성 예시(뒷면)
1 병력(病歷) 신고서(응시자가 작성) - 정신질환, 경련성 질환, 마약류, 알콜중독 등 - (1) 귀하는 정신분열증·정동장애(精神障礙) 및 이에 준하는 중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(있는 경우) 병명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 (2) 귀하는 경련성 질환(간질)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(있는 경우) 병명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 (3) 귀하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·알콜중독 등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(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) 병명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 (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) 단속 일시: 취한 행위: 응시자: 년 월 일 ※ 단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, 「도로교통법」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 판정관 의견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	병력(病歷)신고서(응시자가 작성) - 정신질환, 경련성 질환, 마약류, 알콜중독 등 - (1) 귀하는 정신분열증·정동장애(精神障礙) 및 이에 준하는 중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(있는 경우) 병명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 (2) 귀하는 경련성 질환(간질)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(있는 경우) 병명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 (3) 귀하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·알콜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? (치료사실이 있는 경우) 병명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 병원: (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) 단속 일시: 취한 행위: 응시자: 년 월 일 ※ 단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, 「도로교통법」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 판정관 의견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
4 신체검사서 (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, 진단서 또는 질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) 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주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중심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청력: 양안 좌우 각각 주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중심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신체검사: 양안 좌우 각각 주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중심시력: 양안 좌우 각각 검사결과 적격 여부: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응시자: 년 월 일 판정관: 년 월 일 의사(의사번호):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	2 신체검사서 (신체검사: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, 진단서 또는 질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) 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주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중심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청력: 양안 좌우 각각 주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중심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신체검사: 양안 좌우 각각 주시력: 양안 좌우 각각 중심시력: 양안 좌우 각각 검사결과 적격 여부: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응시자: 년 월 일 판정관: 년 월 일 의사(의사번호):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
5 운전면허 신체검사서(병원 보관용) 응시자: 년 월 일 판정관: 년 월 일 의사(의사번호):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	3 신체검사서 응시자: 년 월 일 판정관: 년 월 일 의사(의사번호): [] 적정 []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

① 의료기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② 시력은 양안과 좌·우 각 안을 측정 합니다.

③ 검사결과 적격여부는 기입하지 않습니다.
(시험장 판정관 작성)

④ 의사 면허번호는 정확히 기재합니다.

⑤ 병원보관용은 절취하여 병원에서 보관바랍니다.
(보관기간은 5년입니다.)

신체검사서 기재내용 위·변조를 막기 위해, 시력, 청력 등 기재난에 투명테이프 부착바랍니다.

연 락 처

운영일반

콜 센 터 ☎ 1577-1120

제도개선

면허민원처 ☎ 02)2230-5260

감사합니다